2023년 재산등록

□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시기 및 내용

-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(신고)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(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)
-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·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(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)

□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및 공개주체

-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(법 제10조제1항)

공개대상자	공개주체
기초의원, 광역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(경기아트센터 사장)	**광역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** (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)

□ 공개종류

- (정기공개) 연 1회(3월중), 정기변동신고자(매년 12.31. 기준) 대상
- (수시공개) 월 1회,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

□ 재산등록 등록·공개 현황

- 등록현황 : 2023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완료
- 공개장소 : *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
  - * Link : https://www.gg.go.kr/bbs/board.do?bsIdx=737&menuId=2957